

律藏과 宗憲 宗法과의 비교 연구

—僧侶法을 중심으로

김정천(경성)
중앙승가대학교

I. 들어가는 말

律藏은 승가의 생활 규범이다. 승가의 집단도 다양한 부류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승가는 재가자들에게 歸依의 대상이므로 청정하고 화합해야 하는 동시에 師表가 되어 信心을 증장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종헌 중법에서도 수행과 교화의 의무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승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단생활에 관한 규범과 규칙을 망라한 것이 바로 율장이다.

율장은 대중의 청정과 화합을 꾀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에 따른 조목을 하나씩 제정하는 隨犯隨制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행자의 日常事와 수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율장은 불교 교단의

생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종파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특색을 띠는 論藏과는 달리 모든 종파에서 大同小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승불교 교단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율장이 추구하는 것은 淸淨과 和合, 無所有와 공동체 정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청정은 도덕과 윤리이며, 절제와 제어를 바탕으로 한다. 율장의 기본이 되는 도덕 조목은 不婬行·不殺生·不偷盜·不妄語의 四波羅夷 조항이다. 음행과 살생과 투도와 망어는 승가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인 동시에 청정을 유지하는 근본 토대이다. 또한 이것을 범하면 승가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중대한 犯罪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화합이다.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五逆罪의 하나로 취급되며, 화합하고 서로를 즐겁게 하며 다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수행생활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승가의 수행자는 衣食住의 생활에서 無所有와 知足의 頭陀行을 실천해야 한다. 의복에서는 三衣만을 수지하고 또한 糞掃衣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새 옷을 입더라도 흰 형질을 덧대어 입는 것으로 분소의를 실행할 수 있다. 음식에서는 乞食으로 해결하며 만약 그 날 탁발한 음식을 다음날 먹으려고 저장하거나 비축하는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된다. 생활하는 거처와 침구는 조출하고 검소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나무 밑이나 공동묘지 등의 공간에서 無常觀과 不淨觀 등의 觀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병이 났을 경우에도 陳棄藥 등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을 四依法¹⁾으로 설

1) 『十誦律』卷21, (大正藏 23, 156c-157a). “爲受具足人說四依 依是法比丘出家受具足 成比丘法 何等四依 依糞掃衣 … 依乞食 … 依樹下止 … 依陳棄藥.”

명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정신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복과 음식 등의 일상의 필수품들을 반드시 대중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실현된다. 四方僧物과 現前僧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율장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共用하며 나누는 것은 승가 구성원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이 된다. 이와 같은 승가의 전통적인 분배 원칙은 물질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심리적인 연결까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율장의 條文은 不改變의 원칙에 의해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다만 持犯開遮의 합법적 응용만 허용된다. 그러나 문화적·지리적 차이로 수행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에 합당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 것이 바로 선원의 청구이다. 율장에 의거하자면 비구가 땅을 파거나 직접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되므로 淨人이라는 방편을 활용하였지만, 청구의 경우 이런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규범을 만들어 비구가 직접 땅을 파는 노동을 하거나 금전의 보시를 직접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율장에서 보자면 波逸提나 突吉羅 등의 犯戒에 해당되는 것이다.

승려법 역시 율장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제정한 것은 시대적인 변화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율장과는 달리 승려법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율장에 대한 토론이나 연구와 함께 승려법 등의 종헌 중범에 대한 연구와 토론도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율장은 수행의 근간이 되는 바탕이자 뿌리이지만, 승려법 등의 종헌 중범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진 활용법이기 때문이다. 體와 用

은 분리되거나 개별적인 입장이 아니며, 동시적이고 총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승려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무와 징계 등은 율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비교 연구하는 것으로 승려법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促發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II. 律藏의 처벌법

律이란 범어 Vinaya로 音譯하여 毘那耶·毘尼, 意譯하면 調伏·滅·離行·善法·志眞 등으로 惡業을 調伏하여 善法을 增長시키는 것을 뜻한다. 율은 출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隨犯隨制(隨緣制戒)에 의해 성립되었다. 즉, 출가자가 罪惡을 저지르면 釋尊에 의해서 此後에는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어떠한 벌칙에 처한다고 제정하는 것으로 출가 교단의 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율을 범하는 비구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과 벌칙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법률과 같은 것으로 他律的이며, 불교 교단의 규칙과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律을 단적으로 말하면 比丘·比丘尼戒의 행위와 條文, 교단의 벌칙 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比丘戒는 波羅夷·僧伽婆尸沙·不定法·尼薩耨波逸提·波逸提·波羅提提舍尼·式叉迦羅尼·滅諍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율을 범할 경우에는 不共住·別住·摩那埵·捨墮·突吉羅 등의 처벌에 처해진다.

1. 不共住

姪行·殺生·偷盜·妄語 등의 바라이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로 대중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교단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刑法의 死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구니의 경우 위의 4바라이에 共染心男子相觸摩戒·與染心男子立語共期八事戒·知他比丘尼犯波羅夷覆藏戒·順從作舉比丘戒 등의 8바라이법이 적용된다. 不共住로 처벌되는 자는 비구로서의 자격을 영구히 잃게 되며, 바라이를 범하면 비구나 비구니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斷頭罪라고도 한다.

2. 僧殘法

僧殘法은 비구 13戒, 비구니 17戒로 不共住 다음의 重罪에 해당한다. 바라이죄(不共住)를 범하게 되면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되기 때문에 僧無殘罪이지만, 이에 반해 승잔죄는 참회하고 贖罪의 법을 이행한다면 出罪될 수 있으므로 僧殘(僧伽婆尸沙)이라고 한다.

僧伽는 僧, 婆는 初, 尸沙는 殘의 뜻으로 僧初殘이라 번역하며, 승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범계행위 가운데서 처음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로, 이를 범한 사람은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 있어 바라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추방되지 않지만 승려의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別住와 摩那埵 등 참회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명 이상의 대중에게 진심으로 참회하여 허락을 받음으로써 구제될 수 있는 戒法이다. 승잔법에서는 주로 성욕·중매·건축·모함·대중규율 위배에 관한 것 등을 다

루고 있으며, 비구·비구니계 제1조로부터 제9조까지는 범을 어기는 순간 바로 犯戒로 인정되는 것이고, 비구계 제10조로부터 제13조, 비구니계 제10조로부터 17조까지는 범하는 즉시 범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다른 대중들로부터 세 번이나 충고를 받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경우 범계로 인정되는 것 등의 두 종류가 있다.

1) 別住와 摩那埵

승잔법의 별주와 마나타는 犯戒者에 대한 贖罪法으로, 이것은 비구·비구니계를 통틀어서 승잔법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極重罪인 바라이죄는 이를 범하게 되면 승가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참회와 구제의 방법이 全無하며, 따라서 승단 내에서 속죄의 의미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승잔죄 다음의 30捨墮法(尼薩耒波逸提)은 금전과 재물의 부당한 所持를 금하는 것으로, 부당한 소지품의 捨法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 청정하게 되므로 服罪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이하의 90單墮인 波逸提法이나 百衆學法(式叉迦羅尼)도 승가를 대상으로 참회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만으로 청정하게 되므로 승잔죄를 범한 자만이 승가 가운데서 일정기간의 징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懺悔의 懺은 과거에 잘못된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며, 悔란 다음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가 있다. 『四分律』에서도 ‘대덕스님들이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이제부터 이후로는 스스로를 마음으로 자책하고 멈추어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²⁾라

2) 『四分律』卷44, (大正藏 22, 890a). “大德受我懺悔 自今已去自責心止不復作.”

고 스스로 참회를 청하고 다짐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懺이란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꾸짖어 뉘우치는 것이며, 悔란 몸으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계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회는 중요한 수행법인 동시에 승가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인 것이다.

참회는 자기 스스로 참회하는 것과 또는 타인에 의해서 참회하는 것이 다르며, 범계를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먼저 본인 스스로 범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러나 범계는 인정하면서 참회하지 않는 비구는 表白과 白四羯磨로 다스려야 한다. 세존은 참회하지 않는 비구에게는 먼저 대중을 모이게 한 후 犯戒에 대한 것을 들추어내고, 들추고 나서는 기억시키고, 기억시키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라고 설명하였다.³⁾ 이것이 세존이 설명하는 표백과 백사갈마에 의해 교단을 여법하게 통제하는 법이다.

죄를 숨긴 사람에게는 숨긴 일수에 따라 징벌을 가하는 隨覆藏日羯磨⁴⁾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분율』人毘度 가운데에 자세하게 논해져 있다. 수복장일갈마가 생기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세존이 사위국에 계실 때에 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는 끝까지 숨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였고, 이것을 비구들이 세존께 여쭙자 세존은 ‘대중이 그 비구에게 숨긴 날수에 따라 숨

3) 『四分律』卷45, (大正藏 22, 894c). “爾時世尊在拘睺彌 時闍陀比丘犯罪 諸比丘語 言汝有罪懺悔 答言不懺悔 … 諸比丘往世尊所 頭面禮足却坐一面 以此因緣具白佛言 世尊以此因緣集比丘僧 … 呵責已告 諸比丘言 聽衆僧與闍陀比丘作不懺悔罪舉白四羯磨 應如是作 應集僧 集僧已與作舉 作舉已與作憶念 作憶念已與罪.”

4) 覆藏이란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긴 죄를 다스리는 표백과 백사갈마를 주도록 허락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죄를 숨긴 비구는 대중에게 와서 대중의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고서, '대덕스님이시여, 저 아무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 숨졌는데 숨긴 날수에 따라 지금 대중에게 와서 숨긴 갈마를 주기를 바라오니, 대중스님들은 저를 가없이 여기시어 나에게 감춘 날수에 따르는 갈마를 주십시오.'라고 두 번, 세 번 말하면 대중은 능히 갈마할 수 있는 비구를 뽑아 표백과 백사갈마를 통해 징벌하여 그의 죄를 벗겨 주는 것이다.⁵⁾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승잔죄를 범하고 숨긴 사람에게 숨긴 날만큼 따로 거주시키는 別住法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별주처분을 받은 비구가 거듭 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다시 6일을 가산하여 별주를 부과하는 것이 摩那埵이다. 이 마나타를 주는 법도 별주처분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백과 백사갈마로 대중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데 이것을 覆藏本日治羯磨라고 한다. 本日治란 어떤 징벌을 받고 있는 비구가 거듭 계를 범하였을 때 다시 어떤 처분을 내리기를 바라면 바로 그 날 갈마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또 覆藏本日治羯磨를 의해 마나타를 행하는 동안에 다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 앞에 나아가 죄를 지은 사실을 아뢰고 摩那埵本日治羯磨를 주기를 세 번에 걸쳐 청해야 한다. 이렇게 세 번 청하면 대중은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표백과 백

5) 『四分律』卷45, (大正藏 22, 896b-c). “爾時世尊在舍衛國 時有比丘犯僧殘罪覆藏作如是念 我當云何自諸比丘 諸比丘白佛 佛言聽僧爲彼比丘隨覆藏日與治覆藏罪作白四羯磨應如是與 彼比丘來至僧中偏露右肩脫革屣禮僧足合掌胡跪白如是言 大德僧聽 我某甲比丘犯僧殘罪覆藏 我某甲比丘犯僧殘罪隨覆藏日 今從僧乞覆藏羯磨 願僧與我隨覆藏日羯磨慈愍故 如是第二第三說衆中應差堪能作羯磨者 如上作 如是白 … 與某甲比丘隨覆藏日羯磨竟.”

사갈마를 하여 다시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는 것이다.

이상은 승잔죄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하였을 경우에 다스리는 법이다. 승잔죄를 범하고 하루나 열흘 밤을 숨긴 경우에 거행하는 갈마는 일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覆藏一夜白四羯磨 내지 覆藏十夜白四羯磨 등이라고 한다.

이것은 죄를 숨긴 사람이 사실을 고백하고 징벌할 것을 요청하면 대중은 위의 갈마법과 같이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갈마하는데, 먼저 하루 밤이나 열흘 밤 동안 숨긴 날 만큼 갈마를 주고 난 후 이것을 다 행하면 다시 대중을 모아 6일간 마나타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隨覆藏日羯磨와 摩那埵를 주는 것이다.⁶⁾

다음 여러 가지 죄를 범하여 기억나는 범계와 기억나지 않는 범계가 있을 경우에는 기억나는 것만 다스리고,⁷⁾ 죄를 숨긴 날수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기억나는 일수만 다스리면 된다.⁸⁾ 또 여러 가지 승잔죄를 범했는데 범한 수효와 날수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淸淨已來覆藏羯磨를 주면 된다.⁹⁾

다시 말해서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승가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 별

6) 『四分律』卷45, (大正藏 22, 898c-899a).

7) 前揭書, 899b. “時有一比丘 犯二僧殘罪二俱覆藏 憶一罪不憶一罪 彼比丘隨所憶罪隨覆藏日 從僧乞覆藏日羯磨 僧與彼比丘隨所憶罪隨覆藏日羯磨 彼比丘行覆藏 時憶第二罪不知云何白諸比丘 諸比丘白佛 佛言 聽僧與彼比丘隨憶第二罪覆藏日與覆藏羯磨.”

8) 前揭書, 901a. “爾時有比丘犯僧殘罪 知日數不知日數 覆藏不覆藏 等覆不等覆 一名多種 自性非自性 住別異 彼作如是念 我當云何 白諸比丘 諸比丘白佛 佛言 聽僧與彼比丘隨所覆藏日與覆藏羯磨.”

9) 前揭書, 903b. “時異住處有比丘犯衆多僧殘罪 彼比丘不憶犯數不憶日數 彼作如是念 我當云何 白諸比丘 諸比丘白佛 佛言 若比丘犯僧殘罪不憶犯數不憶日數 應與淸淨已來覆藏.”

주(parivāsa)¹⁰⁾와 마나타(mānatta)¹¹⁾이며, 마나타處分에는 覆藏本日 治羯磨와 마나타本日治羯磨가 있다. 마나타는 6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따로 머무르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고의적으로 감추는 경우에는 그 엄폐한 일수만큼 別住시켜 마나타에 가산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별주와 마나타 처분을 끝낸 비구에게 죄를 풀어 주는 법을 出罪羯磨라고 한다. 먼저 마나타를 모두 이행한 비구가 대중에 와서 죄를 벗겨 주기를 청하면 대중은 능히 갈마를 할 수 있는 장로를 뽑아 표백과 백사갈마에 의해 대중의 동의를 얻어 풀어 주게 된다.

승잔죄를 지은 비구가 일정한 곳에서 따로 머무르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는 별주와 마나타 처분을 이행하고 청정한 승가 가운데로 복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단을 통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며, 종헌 종법 상에서도 제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참회와 근신의 정상에 따라 復籍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격 상실

별주와 마나타 등의 징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10) 李太元, 「초기불교교단생활」, 263쪽. 僧殘罪를 범한 비구에게 거처를 따로 정하여 그 곳에 머무르면서 외부와의 일체 거래를 끊고 홀로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는 것. 즉, 성적인 악습이나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등의 죄를 지은 비구에게 죄를 짓고 숨기고 있었던 동안 따로 홀로 거주하면서 참회하는 징계를 말한다. 대개 죄를 범한 비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별주 처분을 청하여 받는다.

11) 前掲書. 故意로 射精을 하는 등의 성적인 죄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즉시 승단에 고백하고 救罪를 청하면 승단으로부터 6일 동안의 마나타 처분이 내려진다. 혹은 별주가 끝났을 경우에도 역시 6일 동안의 마나타 처분이 내려진다. 마나타도 일종의 별주 처분이지만, 기본적인 별주는 죄를 숨기는 기간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지며 마나타의 별주는 언제나 6일 동안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가지 자격을 상실한다.

남에게 具足戒를 주지 못하고, 남의 依止師가 되지 못하며, 沙彌를 기르지 못하고, 대중이 뽑아서 比丘尼를 教授하라는 請을 받지 못하며, 대중이 뽑아도 교수하지 못한다.

戒를 설하지 못하고, 대중이 戒律의 이치를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대중이 뽑아서 羯磨를 하게 하여도 하지 말아야 하고, 대중이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여러 가지 일을 토론할 적에 참석하지 못하며, 대중이 뽑아서 믿음직한 使命을 맡기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 아침에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며, 저물게 돌아오지 못하고, 비구와 친해 가까이 할지언정 外道와는 친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며, 모든 비구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고,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이 그가 범한 것에 따라 갈마를 주거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죄도 범하지 말아야 하며, 비슷한 죄나 거기서 생긴 죄도 범하지 말아야 하고, 갈마법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갈마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비구가 자리를 펴서 공양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그가 발 씻어 주는 것을 받지 못하며, 그가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그가 가죽 신을 닦아주는 것을 받지 못하며, 그가 안마해 주는 것을 받지 못한다.

올바른 비구가 예배하고, 합장하고, 문안하고, 마중하고, 衣鉢을 들어주는 것을 받지 못한다.

올바른 비구를 드러내어 기억시키거나, 자백시키거나, 혹은 남의 일에 證人이 되거나, 남의 布薩과 自恣를 막거나, 좋은 비구와 싸우지 못

한다.¹²⁾

계를 범하여 대중의 갈마에 의해 징벌을 받는 비구는 이상의 35가지를 행할 자격을 상실한다. 율장에서는 이렇게 계를 범하였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비구에게 많은 제재를 가하였는데, 중헌 중범 상에서 제적 등의 징계에 처한 승려에게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에 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을 박탈하는 것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것이다.

3. 尼薩耆波逸提

尼薩耆는 捨, 波逸提는 墮의 의미이다. 줄여서 尼薩耆라고도 하며, 재물을 버려야 하는 墮罪이다. 비구와 비구니 모두 30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가한 승려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과 관련된 조문으로 부당하게 얻은 보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의류나 보물·물물교환·鉢盂·服藥 등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계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고 참회해야 하는 罪過를 捨墮라고 한다. 만약 참회하지 않고,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墮라고

12) 『四分律』卷45, (大正藏 22, 889c). “五事不應作 一不應授人大戒 二不應受人依止 三不應畜沙彌 四不應受僧差教授比丘尼 五若僧差不應教授 是爲呵責羯磨竟五事不應作 復有五事不應作 不應說戒 若僧中間毘尼義不應答 若衆僧差作羯磨不應作 若僧中採集智慧者共評論衆事不得在其例 若僧差作信令不應作 是爲呵責羯磨竟五事不應作 復有五事不應作 不得早入聚落 不得迫暮還 應親近比丘不應親近外道 應好順從諸比丘教 不應作異語 呵責竟五事不應作 復有五事不應作 衆僧隨所犯爲作呵責羯磨已不應復更犯此罪 餘亦不應犯 若相似若從此生者 若復重於此不應嫌羯磨及羯磨人 呵責竟五事不應作 復有五事不應作 善比丘爲敷座供養不應受 不應受他洗足 不應受他安洗足物 不應受他拭革屣 不應受他指摩身 呵責羯磨竟五事不應作 復有五事不應作 不應受善比丘禮拜合掌問訊迎接持衣鉢 呵責羯磨竟五事不應作 復有五事不應作 不應舉善比丘爲作憶念作自言不應證他事不應遮布薩自恣 不應共善比丘諍 是爲呵責竟五事不應作.”

한다. 즉, 죄를 범하는 사람은 지옥·아귀·축생의 三惡道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참회에 앞서 버린 물건은 참회가 끝난 뒤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당사자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金銀이나 錢寶와 같이 비구에게 所有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4. 波逸提

바일제란 가벼운 죄로서 單提, 또는 單墮라고 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는 뜻이지만 그러나 참회하는 것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비구 90조항, 비구니 178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범계하였을 경우에 대중에게 다시는 이 계를 범하지 않겠다고 참회하는 것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바일제의 동기는 물건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이 다만 언어·행동·用心·생활규범 등으로 인하여 제정된 것이다.

5. 波羅提提舍尼

바라제제사니란 對他說·向彼悔·悔過法 등으로 번역한다. 비구 4조항, 비구니 8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 병들지 않은 비구가 대중들과 다른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참회를 할 때는 한 스님을 향하여 하면 그 죄가 소멸된다. 즉 바라제제사니의 동기는 모두 공양을 받는 데에 따른 것으로 이를 범하게 되면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贖罪가 된다.

6. 式叉迦羅尼

衆學法·應當學·應學作 등으로 번역한다. 그 내용은 衣服을 착용하는 것에 관한 것·마늘에 들어가는 것·앉고 일어나는 것·식사에 관한 것·발우를 보관하는 것·대소변에 관한 것·설법에 관한 것·불탑에 관한 것·행각에 관한 것·나무에 올라가는 것에 관한 것 등이다. 이 계를 범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것으로 그 죄가 소멸되는데, 항상 마음속으로 삼가고 조심할 것을 다짐한다는 뜻에 應當學이라고 하는 것이다.

율은 승가의 규칙으로 승가는 비구·비구니 승가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신도인 우바새와 우바이는 승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도에게는 율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율은 승가에 들어간 비구·비구니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만약 지키지 못하면 승가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승가의 생활을 견디어 내는 자만이 율장의 禁律과 制規를 受持할 수 있다. 율장에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승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비구·비구니 승가의 존속이 곧 불교의 존속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율장의 목적은 正法久住에 있다. 정법구주를 위한 승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비구계를 제정하고 비구의 行止와 威儀를 규정하는 것이다. 僧伽는 佛道실천의 현장이며, 律藏은 이러한 승가를 護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III. 淸規

淸규란 선종의 총림에서 수도하는 청정한 많은 대중이 서로의 佛道 完成을 위해서 지켜야하는 규정과 규칙을 말한다. 승단의 생활규범을 제정한 청규의 출현은 선종을 교단으로 독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淸규의 어원은 청정한 총림의 수행자(淸)가 依遵해야 할 규율(規)의 의미이다. 즉 지켜야 할 사람(淸)과 依遵해야 할 법(規)을 의미하는 能所의 관계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규는 율장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규에는 총림의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선종교단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犯戒者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율장의 내용보다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다.

선원청규의 제정은 唐代의 百丈懷海(749~814)에 의한『百丈淸規』가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백장회해가 훗날 馬祖의 門下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청규를 제정하여 선종교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古淸規』라고 일컬어지는 『백장청규』는 貞元年間(785~804)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찍이 散逸하여 그 전모를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한 『禪門規式』이 『景德傳燈錄』卷6의 百丈懷海傳에 부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禪門規式

百丈大智禪師는 禪宗이 처음 少室(달마)로부터 시작하여 曹溪慧能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律宗 寺院에 거주하였는데, 비록 禪院을 따로 두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說法이나 住持하는 법이 아직 法規에 맞지 않아 항상 마음에 걸렸다.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祖師의 道를 널리 펴고 미래에까지 끊이지 않게 하려면 어찌 여러 諸部の 阿含敎을 따라서 行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시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瑜伽論』 『瓔珞經』은 바로 大乘의 戒律인데 어찌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大師가 말하기를 ‘내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大小乘의 戒律에 국한하지 않고, 또한 大小乘의 戒律과 다른 것도 아니다. 마땅히 두루 섭렵하고 절충하여 올바른 규범을 제정하여 힘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창의로서 禪宗의 거처를 따로 세우게 되었다.

무릇 道眼을 갖추고 존경할 만한 德望있는 사람을 長老라고 불렀으니, 마치 서역에서 道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부르는 칭호처럼 須菩提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이미 敎化를 펴고 있는 선지식은 즉 方丈室에 모시도록 할지니 이는 維摩居士의 方丈室과 같은 뜻으로, 사사로운 개인의 침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佛殿을 세우지 않고 오직 法堂만을 설치하는 것은 佛祖로부터 친히 부촉받은 이로서 당대에 존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모여든 학도의 대증은 많거나 적거나, 높거나 낮거나 모두 僧堂에 들어가서 法臘에 의거하여 좌석을 배치한다.

긴 평상과 선반을 설치하여 도구들을 걸어 둔다.

누울 적에는 반드시 비스듬히 침상의 귀에 기댄다. 右脅으로 누워 吉祥
睡를 하는 것은 坐禪을 너무 오래하였기 때문에 잠깐 누워서 쉬는 것일
뿐이다. 모두 四威儀를 갖춘다.

祖室에 들어가 法을 물을 때를 제외하고는 修行者들의 마음대로 맡기
며 부지런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위가 되거나 아래가 되거나에
일정한 규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禪院의 모든 대중은 아침에 參問하고 저녁에 모여야 하며, 長老가 法堂
에 올라 說法할 적에 소임을 맡은 이나 대중들은 모두 모여서 귀를 기
울여 들도록 한다.

賓主의 禪問答이 계속되어 宗旨를 격양하는 것은 모두 法에 의거하여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밥과 죽으로 두 때를 골고루 나누는 것은 절약과 검소를 힘쓰고 法과
음식을 아울러 運用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普講의 法을 실행함은 위와 아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열 가지 소임을 두는 것을 寮舍라고 한다. 각기 한사람의 首領을 두어
여러 사람을 관리하고 일을 경영하는 것은 제각기 그 맡을 부분을 다하
게 하기 위함이다.

혹시 어떤 사람이 거짓 탈을 쓰고 淸淨한 大衆속에 끼어들어 아울러 유
별스럽게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다면 즉시 僧堂의 維那는 그를 검거하
여 끌어내어 본래의 위치에 앉히거나 禪院 밖으로 내쫓는 것은 청정한
대중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규범을 위반하면 즉시 주장자로 그를 때리거나, 대중
을 모아서 그의 衣鉢과 道具一切를 태워버려, 偏門으로 쫓아내 버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이 한 가지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이익이 있으니 그 첫째는 청정한 대중을 더럽히지 않고 공경한 신뢰를 내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승려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불교의 체계에 따르는 것이다. 셋째는 관청이 소란하지 않고 감옥이나 송사, 즉 시비가 줄어들다. 넷째는 밖으로 새지 않고 종문의 기강이 잘 보호되는 것이다.

선문의 독립과 실행은 백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제 그 대략의 개요를 서술하여 후대의 학자에게 보이고자 함이니 그 본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¹³⁾

『선문규식』의 청구는 선종교단을 지도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자, 수행자들의 생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달마로부터 비롯되는 初期禪宗의 教團에서는 전통적인 律寺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수행하였지만, 선종의 발전과 함께 대중의 규모가 점점 확충됨에 따라서 律寺의 전통적인 규범으로 생활하고

13) 『景德傳燈錄』卷7, (大正藏 51, 250c-251b). “百丈大智禪師 以禪宗肇自少室 至曹谿 以來 多居律寺 雖別院然於說法住持 未合規度故常爾介懷 乃曰 祖之道欲誕布化元冀來際不泯者 豈當與諸部阿笈摩教爲隨行也 或曰 瑜伽論 瓔珞經 是大乘戒律 故不依隨哉 師曰 吾所宗非局大小乘 非異大小乘 當博約折中 設於制範務其宜也 於是創意 別立禪居 凡具道眼 有可尊之德者 號曰長老 如西域道高臘長 呼須菩提等之謂也 既爲化主即處於方丈 同淨名之室 非私寢之室也 不立佛殿 唯樹法堂者 表佛祖親囑 授當代爲尊也 所囊學衆 無多少 無高下 盡入僧堂中 依夏次安排 設長鏈床 施拋架 掛搭道具 臥必斜枕 床褥 右脅吉祥睡者 以其坐禪既久 略偃息而已 具四威儀也 除入室請益 任學者勤怠 或上或下不拘常準 其闔院大衆 朝參夕聚 長老上堂陞坐 主事徒衆 雁立側聆 賓主問酬 激揚宗要者 示依法而住也 齋粥隨宜 二時均遍者 務于節儉 表法食雙運也 行普請法 上下均力也 置十務謂之寮舍 每用首領一人 管多人營事 令各司其局也 或有假號竊形混于清衆 并別致喧擾之事 卽堂維那檢舉抽下 本位掛搭 擯令出院者 貴安清衆也 或彼有所犯 卽以拄杖杖之 集衆燒衣鉢道具遣逐 從偏門而出者 示恥辱也 詳此一條制有四益 一不汚清衆 生恭信故 二不毀僧形 循佛制故 三不擾公門 省獄訟故 四不洩于外護宗綱故 禪門獨行 由百丈之始 今略叙大要 遍示後代學者 令不忘本也.”

수행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문규식』에서 ‘祖師禪의 道理를 널리 펴고 미래에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찌 諸部の 阿습의 가르침만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가 ‘『瑜伽論』과 『瓔珞經』은 大乘의 戒律인데 어찌 그것에 따라 수행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것도 당시 선종의 수행자에게 전통적인 율원의 생활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백장은 당시 禪宗의 존재적인 입장과 시대적인 과제를 절감하고 선종교단의 수행에 적합한 현실적인 선종규범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백장이 청규를 제정하면서 그 첫머리에 ‘내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大小乘의 계율에 국한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대소승의 계율과 다른 것도 아니다. 마땅히 두루 섭렵하고 절충하여 좋은 규범을 제정하여 수행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것처럼 대소승의 계율의 정신을 集約하고 절충하는 동시에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과 수행생활에 가장 적절한 규범이 될 수 있는 청규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리와 기후, 풍토 등의 여러 가지 생활문화나 관습 등이 인도와 상당히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중국불교에서는 현실적인 승단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수행생활의 규율이 요구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맞추어 청규를 제정한 것이다. 청규의 제정 이후 중국불교에서는 율원과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원에서 거주하면서 수행하던 禪門이 비로소 독립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규에 의한 새로운 교단생활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청규에는 수행자 개개인의 승원생활에서의 주의사항과 더불어

어 청중의 생활규칙을 어기고 어지럽히는 違法者에게 가해지는 엄중한 별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중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의 연령의 高下에 관계없이 모두 僧堂에서 함께 수행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승당내의 좌석의 배치는 修行年數(僧臘)에 따라서 上下로 구분하였다. 또한 승당에는 긴 평상을 설치하여 대중이 모두 평상 위에서 좌선에 힘썼으며, 가사 등을 걸어두는 선반을 설치하고 도구를 안치하는 것 등도 수행생활에 적합하도록 지극히 간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들이 승당생활에서의 行·主·坐·臥의 四威儀를 갖추도록 하면서 조실스님에게 參問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은 自發的이고 創意的인 수행생활에 힘쓸 것을 책려하는 것이다.

‘普請의 법을 실행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고 한 것에서 보청이란 叢林의 長老를 비롯하여 전대중이 빠짐없이 평등하게 사원의 작업이나 運力에 동참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청의 법은 개인적인 作業이나 任務의 行法이 아니라 주지에서부터 행자에 이르기까지 사원의 전대중이 공동으로 평등하게 참여하는 노동을 뜻하는 것으로, 自給自足の 수도생활을 지향하는 생산적인 근로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출가승으로 땅을 파거나 생산노동에 따르는 초목을 참벌하는 등의 행위는 波逸提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출가비구에게 耕作과 생산노동은 금지되어 왔으며, 오로지 좌선에 힘쓰면서 걸식에 의한 청빈한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종래의 전통에서 탈피하여 계율의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여 보청의 법을 규정하고 자급자족에의 생산적인

육체노동을 통해 새로운 수행생활을 정착하게 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전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 淸規의 처벌법

율장에 不共住와 別住·摩那埵·懺悔 등의 처벌 조항이 있다면 청구에는 산문 밖으로 내쫓거나 衣鉢과 道具를 불태우고 주장자로 때리는 등의 벌칙으로 율장의 내용보다 더욱 엄하게 犯戒者를 처벌하고 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거짓 탈을 쓰고 청중 속에 끼어들어 아울러 유별스럽게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으면 즉시 승당의 유나는 그를 검거하여 끌어내어 본래의 위치에 앉히거나 선원 밖으로 내쫓는 것은 청중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규범을 위반하면 즉시 주장자로 그를 때리거나 대중을 모아서 그의 의발과 도구 일체를 불태워서 편문으로 쫓아내 버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청정한 대중을 더럽히지 않고 공경과 신뢰를 내게 하는 것이다. 身口意 三業이 올바르지 않다면 같이 살지 못한다. 淸衆이 편안해야 공경과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는 수행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부처님의 세계에 따르는 것이다. 만약 적당히 징계하여 범복을 남겨두면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므로, 의발과 도구 일체를 불태워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셋째는 관청이 소란하지 않고 감옥이나 訟事, 즉 是非가 줄어들는 것이다.

넷째는 교단의 허물이 밖으로 새지 않고 종단의 기강이 잘 보호되는 것 등이다. 석존의 당시에 육군비구의 무리가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像法의 末法時에 온전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만약 한 비구의 허물을 보고서는 우레처럼 비방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율장에서는 바라이를 범하면 불공주로 처벌하여 비구나 비구니의 자격을 상실하여 청정한 대중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청규에서는 규칙을 違犯한 比丘의 衣鉢을 소각하고 주장자로 때리면서 산문 밖으로 출송시켜 버리는 보다 엄격한 벌칙에 처해진다. 청규를 제정하는 목적도 율장과 마찬가지로 총림과 승가의 유지존속과 발전, 승단의 화합에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종헌 제4장 「의식과 법회」條에는 ‘本宗의 의식은 佛祖의 遺訓과 傳來의 백장청규 및 禮懺法에 依遵한다’고 명시하여, 청규를 일종의 의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청규는 의식이기에 앞서 율장의 현실적인 보완이자 시대적인 활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종헌과 종법 역시 율장과 청규를 기초로 제정되었으며, 만약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이 율장이나 청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단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종헌과 종법 역시 청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수행 조건과 상황에 적합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僧侶法

宗憲 宗法 上の 승려법은 승려의 분한과 자격, 의무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는 승려가 社會의 精神的 指導者이며 봉사자이자 聖職者로서 고매한 人格과 資質과 能力을 갖추어서 평소의 言行이 大衆의 師表가 되고 佛陀의 救世 願力 실천자로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佛國土 건설의 使命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제정의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는 승려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敎育과 修行과 敎化와 救護와 宗團法令을 遵守해야 하는 등의 5大義務를 말한다. 敎育의 의무로는 수도와 敎화에 전념하는 성직자로서의 긍지와 품위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敎育과 公人으로서의 지도자 敎育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 수행의 의무로는 佛祖의 慧命을 이어받고 見性成佛 傳法度生하기 위하여 參禪과 念佛, 看經과 呪力 등의 修行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敎화의 의무로는 불타의 智慧와 慈悲의 精神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포교와 봉사, 사회복지 등의 敎化활동을 하여야 하며, 구호의 의무로는 菩薩道의 實踐이 佛子의 本分事임을 명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수 없는 구호대상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구호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여, 自利와 利他 그리고 菩薩道의 실천이 승려에게 부여된 막중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헌 중법과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종단법령준수의 의무 또한 조계종 승려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5대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으로 曹溪宗團의 僧侶法에서는 滅擯과 除籍, 法階降級, 公權停止, 免職, 文書譴責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멸빈은 율장의 不共住나 清規의 山門出送에 해당하며 제적은 別住나 摩那埵 등에, 공권정지나 면직 등은 별주와 마나타의 기간 동안 제한되고 박탈당하는 35事 등에 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승려법의 처벌법

종단의 출가 대중에게는 종헌 종법과 宗令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종단법령 준수의무가 있으며, 만약 법령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처벌이 부과된다. 종헌 종법 가운데 승려법에서는 이러한 징계와 처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違犯의 경중에 따라 멸빈·제적·법계강급·공권정지·면직·변상·문서견책 등의 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1) 멸빈

승려법에 명시된 멸빈이란 첫째,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과 법복, 승려증 등 승려의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둘째, 사찰에서 빈척하고 셋째, 復籍 또는 再得道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율장에서의 不共住에, 창규 가운데서는 衣鉢과 道具 一切를 불태우고 山門에서 出送시키는 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멸빈에 해당하는 범계 행위에 대해서는 제4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佛祖에 대하여 不敬한 행위를 한 자.

둘째, 徒黨을 형성하여 反佛敎的 행위를 자행하는 자.

셋째, 佛戒 가운데 4마라이죄를 범하여 실행을 받은 자.

넷째, 不法 不當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하고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이나 관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항을 유포하고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民刑事間 제소를 일으키는 자.

다섯째,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여섯째,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일곱째, 本宗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여덟째,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分宗 및 脫宗을 기도하는 자¹⁴⁾.

첫 번째 항목에서 설명하는 佛祖에 대한 不敬한 행위는 五逆罪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과 본종과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것 등도 또한 오역죄 가운데 破和合僧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항목인 4마라이죄를 범하여 실행을 받은 것은 율장의 不共住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처벌이다. 또한 종단 내의 조정기관이나 관정기관의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것은 청구에서 처벌을 시행함으로 기대되는 이익 가운데 관청이 소란하지 않고 訟事와 是非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과 일치되

14) 『宗團法令集』 「승려법」 55쪽

는 부분이다.

여섯째 항목에서는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뜻이 없는 비구 역시 멸빈에 처해진다고 설명한다. 참회는 자신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수행법이자, 승가의 화합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참회를 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한 대중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犯戒의 사실에 대해서 참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선의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승적을 제탈하고 승단에서 빈척되는 멸빈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2. 제적

제적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4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처분, 둘째 단계는 공권 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셋째 단계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와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는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 징계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 등이다. 여기서 공권정지란 종단내의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율장의 처벌법에서 별주와 마나타 등의 징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 35事를 제한 받는 것에 견줄 수 있다. 그러므로 공권정지나 면직, 법계강급 등의 제적의 처벌은 별주와 마나타의 기간에 제한받는 35事의 현대적인 해석이자 응용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 처분이 내려진다.

첫째,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범통과 교권을 문란하게 하거나 종단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

둘째,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지속하지 아니하는 것.

셋째, 종단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넷째,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다섯째,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여섯째,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일곱째, 유흥장과 오락장 등에 공개적이고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여덟째, 폭력 행위, 음주 난동, 폭언과 악설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한 자.

아홉째, 사찰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열째, 주지직 인계 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열한째,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열두째,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 대금을 종단 승인 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열셋째,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하게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열넷째,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열다섯째,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열여섯째,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열일곱째,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하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자.

열여덟째, 인의로 행각하면서 여비와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열아홉째,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스무째, 이중호적으로 승적 사무에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자.

스물한째,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하는 자.

스물두째, 선배 승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하는 자.

스물셋째,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기관장의 승인 없이 동원하는 자.

스물넷째, 교육기관장의 승인 없이 사찰의 인사문제로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스물다섯째,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스물여섯째,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스물일곱째, 호적과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자.¹⁵⁾

멸빈의 중징계는 4바라이와 5역죄 등의 犯戒에 의해서 처해지며, 멸빈 다음 단계의 중대한 처벌인 5년 이상의 공권 정지를 받게 되는 범계행위는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거나 공권 정지의 처분에 불복하는 등의 종단의 행정에 관련된 항목과, 종단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축적하거나 혹은 주지직을 금전으로 거래하거나 종단의 재산을 유용하여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거나 사찰의 분

15) 前掲書, 55-57쪽

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등의 재물에 관련된 항목과, 사찰의 분규에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동원하거나 혹은 동원되거나, 은사 혹은 법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선배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하는 등의 범계사항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4마라리와 5역죄 다음의 중대한 범계행위는 종단의 위계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종단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축적하거나 승인 없이 사찰의 재산을 양도, 또는 유용하거나 혹은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등의 재물에 관계된 것과 각종 분규에 고의적으로 개입하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멀빈으로 처벌되었지만, 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기관에 고소나 고발, 탄원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공권 정지로 처벌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민형사상 소송은 아니더라도 사회기관에 종단 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행위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제적의 둘째 단계인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에 처해지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둘째, 총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총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총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자.

셋째, 총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넷째,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다섯째,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여섯째, 직무를 유기한 자.

일곱째,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

여덟째,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아홉째,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열째,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열한째,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

열두째,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열셋째,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열넷째,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 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¹⁶⁾

종단의 행정이나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제적에 해당하며, 종단 자체는 아니지만 종단의 큰스님이나 소임자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5년 이하 3년 이상의 제적에 처해진다. 속복을 수시로 착용하는 등으로 승려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신도와 관련된 항목으로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

16) 前掲書, 57-58 쪽

로 금전적 손실을 가하는 것도 제적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신도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의 소유를 금하는 것은 무소유와 지족을 삶의 지표로 삼는 비구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항목을 종헌 종법에 명백히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이념이나 지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적의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정자를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멸빈은 율장 가운데 불공주에 해당하는 처벌로 대중과 함께 생활하거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복직이나 재득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비록 종무원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과 함께 동일한 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자체를 엄금해야 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불공주나 멸빈의 처벌을 거부하고 역행하는 처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제적의 셋째 단계인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로 처벌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둘째, 속복과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넷째, 고의로 종법과 종령을 위반하는 자.

다섯째,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하여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여섯째,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일곱째,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
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하지 않은 자.¹⁷⁾

문서견책의 처분은 종무상의 지시나 종무처리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고의가 아닌 과오로 중
법과 중령·종규 등을 위반하는 등의 輕微한 非違에 대한 처벌이다. 그
러나 경미한 비위에 대한 처벌이라도 3회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
은 정신적인 해이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약 3회 이상의 문서로 견책당하는 처분을 받
고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정지 3
년 이하 1년 이상의 제적의 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속복과 장발로 속인
과 구별되지 않거나 속가에서 장기간에 유숙하는 등 승려로서의 품위
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행할 때에도 제적의 처벌을 받아 3년 이하 1년
이상 동안 승려 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속
복을 수시로 착용하는 경우에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의 제적으로
처벌되는 반면 속복과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공권정
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그 輕重이 顛倒된 것으
로 思料되며, 차후에 적절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교정 등의 조치가 이
루어져야 하는 조항이다.

다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의 마지막 단계인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로 처벌된다.

17) 前掲書, 58쪽

첫째, 종무원으로서 사찰 재산의 불법처분을 도모한 자.

둘째, 사찰 내에 속가 친족을 데리고 친족에게 소임을 맡기는 자.

셋째, 사찰 주지로서 병고에 시달리는 대중에게 응급치료 조치를 외면한 사실이 있는 자.

넷째, 부하 직원 및 종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중요한 종무처리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함으로써 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종단의 행정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다섯째, 종단의 교육 명령에 불응하는 자.

여섯째, 소정의 분담금 및 종단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

일곱째, 과실로 사찰내 귀중품을 손괴시킨 자.¹⁸⁾

사찰 재산의 불법처분을 도모하는 단계에서 발각되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적 가운데 가장 가벼운 단계인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만약 사찰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였다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받게 되며,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면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제적의 처벌에 가해지지만, 이 경우에는 처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원이나 종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불법처분을 도모한 것과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된다.

18) 前掲書, 59쪽

중단의 교육 명령에 불응한 것은 교육의 의무와 중단법령 준수 의무 등의 두 가지에 모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찰의 주지는 대중을 외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대중에게 응급치료와 조치를 외면하였다면 주지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를 처분하게 된다.

제적이란 승적에서 제외되고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을 박탈하지만,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복직할 수 있는 처벌로 멸빈이 不共住에 해당한다면 제적은 僧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정지나 법계강급 등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거나 3회 이상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의 처분이,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공권 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의 처분이,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상은 모두 참회가 형식에 그치거나 개선의 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각각 앞서 받았던 처분보다 한 단계 강화된 징계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귀중품이나 성보인 문화재 등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고의나 혹은 과실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가 달라진다. 만약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하거나 혹은 도난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에 처해지며, 과실로 사찰의 귀중품을 손괴시킨 경우에는 그 정상이 참작되어 공권정지 1년 이하 면직의 징계가 적용된다.

승가의 위의와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에 회부되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차별된 처벌에 부과된다. 유흥장이나 오락장에 공개적이고 상습적으로 출입하거나 폭력 행위와 음주 난동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탁

발하거나 여비와 약값을 강요하는 등은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에 처하는 중대한 범계행위로 간주되며, 종단의 큰스님과 어른들께 不當한 언사를 행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俗服을 수시로 착용하거나 신도에게 사기 등으로 손실을 가하여 승단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때에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의 제적으로 처벌되고, 속복과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속가에서 유숙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하여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경우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해지는데, 이것은 모두 승가의 威儀에 관련된 것으로 제적에 처해지는 범계행위의 상당부분이 위의에 해당한다.

V. 끝맺는 말

律藏에는 波羅夷와 僧伽婆尸沙, 尼薩耆波逸提와 波逸提, 波羅提提舍尼와 式叉迦羅尼 등의 계율 조목이 있으며, 만약 違犯하게 되면 각각 不共住와 別住, 摩那埵와 捨墮, 懺悔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波羅夷란 4바라이(비구)와 8바라이(비구니), 5역죄(殺父·殺母·殺阿羅漢·出佛身血·破和合僧) 등에 해당하는 범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구나 비구니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되고 다시는 그 명예와 자격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처벌 조항이다.

僧伽婆尸沙는 승단에서 추방당하지는 않지만 重大한 범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贖罪의 법을 이행하고 참회를 거친 후에야 出罪가 가능해지

며, 승단에서 추방되는 불공주에 대비하여 승단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僧殘罪라고 한다. 승가바시사를 범하면 別住와 摩那埵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별주란 승잔죄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긴 비구에게 숨긴 날 만큼 외부와의 왕래가 단절된 別處에 홀로 머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참회하게 하는 징계이다. 마나타는 별주처분을 받은 비구가 거듭 범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다시 6일을 가산하여 별주를 부과하는 것이다. 마나타도 일종의 별주 처분이지만 별주의 경우 자신의 죄를 숨긴 일수에 따라 그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지만, 마나타는 언제나 6일 동안을 기한으로 정하는 것이 다르다. 별주와 마나타를 모두 이행한 비구는 20인 이상의 대중에게 참회하는 절차를 거쳐서 청정한 승단으로 복귀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尼薩耨波逸提란 비구에게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나 보물 등에 관련된 것으로 범계의 동기가 된 부당한 소지품을 버리고 참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회에 앞서 버린 물건은 참회가 끝난 뒤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金銀錢寶와 같이 소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波逸提란 언어나 행동, 생활규범 등으로 인하여 제정된 것으로 참회하는 것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波羅提舍尼란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공양을 받는 데에 따른 것이 그 동기가 된다. 만약 이를 범하면 참회하는 것으로 구제된다.

式叉迦羅尼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것만으로 그 죄가 소멸된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으로 삼가고 조심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뜻에서 應當學이라고 한다.

승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공주를 제외한 모

든 조항에서 참회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出罪 요건이다. 참회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책하는 동시에 이후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중에게 公表하는 수행법으로 승가의 화합을 실현하는 최선의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범계 행위의 輕重에 따라서 참회하는 대중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승가바시사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대중에게, 니살기바일제와 바일제에서는 4인 이상의 승가에 참회해야 하며, 바라제제사니를 범하였을 때에는 1인의 비구 앞에서, 식차가라니를 범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참회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선종의 총림에서 수행하는 대중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을 설하고 있는 淸規는 선종을 敎團으로 독립시키는 결정적인 要因으로 그 意義를 가진다. 청규에서는 山門 밖으로 내쫓거나 衣鉢과 道具를 불태우고 주장자로 때리는 등의 벌칙으로 율장의 내용보다 더욱 엄격하게 총림을 다스린다. 山門出送에 처해지는 범계자의 의발과 도구를 태우는 것은 만약 적당히 징계하여 범복을 남겨둔다면 미련을 갖고 대중의 무리에 합류하려는 의도를 꺾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처사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율장에서 불공주의 처벌을 부과하여 영원히 승단으로 회복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종헌 중법 가운데 승려법에서는 종헌 중법과 종령 및 제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종단법령 준수의무를 강조하고, 만약 법령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승려법의 처벌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승적과 승려의 신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박탈하는 滅衲으로, 율장의 불공주나 청규의 산문출송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멸빈 다음으로 중대한 처벌은 제적이며, 제적의 처벌은 4단계로 부과되는데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종단내의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는 공권정지와 공직에서 해직되는 면직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이러한 공권정지나 면직 등의 처벌은 승가바시사를 범하였을 경우에 별주와 마나타 등의 징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 35事の 제한에 처해지는 것과 상통되는 부분이다.

제적의 처벌이 부과되는 동안에는 승적에서 제외되고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을 박탈당하지만, 참회근신의 정상에 따라 복직할 수 있게 되므로 멸빈이 바라이(不共住)에 해당한다면 제적은 승가바시사(僧殘法)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율장의 처벌법과 중헌 중법 상의 승려법 가운데 처벌법을 살펴보자면 율장과 중헌 중법과의 연계선상에서 청구를 주목하게 된다.

율장이 제정된 지역과의 지리적이나 문화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고, 제반의 조건과 상황에 적합한 규율과 규칙을 제정한 청구의 등장으로 선종이 독립하고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백장이 청구의 첫머리에서 강조하였듯이 대소승의 계율의 정신을 집약하고 절충하는 동시에 당시의 현실과 수행생활에 가장 적절한 규범으로 청구를 제정한 것이다.

조계종의 중헌 중법 역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적합한 수행의 규범으로 율장이나 청구의 응용이자 활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약 종단의 중헌과 중법이 율장이나 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단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역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지리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율장을 기본으로 하

는 동시에 적절하게 응용한 것이 청구이며, 청구를 토대로 선종의 독립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청구에 수순하여 수행하고 청구의 규약에 승복한 절대다수의 승가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승가가 율장의 조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의 履行을 거부하였거나 혹은 청구에 수순하면서 수행하는 풍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는 그저 名文化된 典籍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선종 또한 그 위력과 위상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종단의 종헌 종법 역시 율장과 청구의 현대화이자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제반의 상황과 현실에 적절하게 응용하여 施設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헌과 종법에 의거하고 수순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위상은 물론 조계종 승가의 위상 역시 실추되고 말 것이다.

청구에 수순하여 선종의 독립과 활성화에 기여한 당시의 승가처럼, 우리도 역시 종헌 종법을 의거하고 준수하는 자세를 굳건히 한다면 종단의 위상을 떨치는 것은 물론 실추된 승가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대중의 사표가 되고 불타의 구세 원력 실천자로서 수행과 전법을 통하여 불국토 건설의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계자에 대한 처벌법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참회를 통해서 出罪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승가에서는 범계자에 대해서 보복적인 처벌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으며, 범계자 스스로 자신의 범계행위에 대해서 참회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적인 배려를 중요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종단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중결계록 발간과 포살 법회’에 출가대중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수순이 요구되는 것이며, 출가승단의 청정성 회복을 기대하는 재가불자와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주목에 부응하는 시대적인 과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律藏(vinaya piṭaka), 不共住(parajika), 僧伽婆尸沙(saṃghavaśesa),

別住(parivāsa), 摩那埵(mānatta), 清規(rule of vinaya),

山門出送(banishment from mountain gate), 僧侶法(law of Buddhist monk),

滅擯(expulsion), 除籍(remove from the monks register),

懺悔(repentance), 僧伽의 의무(duty of saṃgha),

宗法과 規則의 遵守(observance of law and rule)

A Comparative Study of Vinaya-piṭaka and the Codes of Chogye Order

Kim, Jung-chun(Ven. Kyung-sung)

Joongang Sangha University

According to *Vinaya-piṭaka*, violation of *parajika* by *bhikṣus* or *bhikṣuṇīs* should be punished with expulsion from *Sangha*. In case of other violations, however, the violators are not expelled from *Saṃgha* but disciplined in various ways. In all the diverse cases of violations, “repent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element of discipline. The violator has to repent of his or her sin and make vow never to commit it in public. Repenting thu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ipline for the harmonization of *Saṃgha*. The minimum number of audience of a repenting rite is prescribed in proportion to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ranging from just one colleague *bhikṣuk* to twenty.

Sōn (Ch'an, Zen) monasteries (*saṃghārāmas*) have *Ch'ing-kuei* or "Codes of Purity," a characteristic feature of Sōn school as an independent ecclesiastical institution of Buddhism. Punishments of violation of the Codes are also various in accordance with the seriousness. The heaviest one is permanent expulsion from Sōn Saṃgha, corresponding to Parajika of Vinaya—piṭaka. The second heaviest one is removal from register and all offices of Sōn Saṃgha. In this case, the violator however may regain the status after some period of punishment and repenting. This corresponds to *saṃghavaśesa* of Vinaya that results in restriction of thirty five items.

The Codes of Purity of Sōn thus retains essential continuity with Vinaya while adapting it to particular histor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conditions. Without such adaptation or modification, Sōn school would not have been able to act and spread as an independent Buddhist institution. It can thus be said that a Sōn order's vitality is determined by its fidelity to its own codes of purity.

The Codes of Chogye Order are also established on the basis of Vinaya with mod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practicality. They are calibrated and optimized for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Korean society today. They can be therefore taken as a localized and

modernized form of Vinaya. Chogye Order would not be able to recover its vitality and identity as a healthy Sŏn order without adequate fidelity to its Codes.

